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37
----------	------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26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1명)

찬 성 자 : 유 용, 송명화, 오현정, 이병도,
김화숙, 강대호, 이은주, 최웅식,
이광호, 양민규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실적이 저조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묘지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함(제4조 및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u></p> <p>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③ 위원은 해당 회의 끝남과 함께 위촉해제된다.</p> <p>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제5조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

-----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시 보존묘지의 지정)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에서 제4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를 삭제하는 것은 기존 심사위원회 관련 편성·집행된 예산이 없고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6,750천원(연 평균 1,3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 보존묘지 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비용 (제5조)	1,350	1,350	1,350	1,350	1,350	6,750
	소계(b)	1,350	1,350	1,350	1,350	1,350	6,750
□총 비용(b-a)		1,350	1,350	1,350	1,350	1,350	6,750

다. 비용추계 전제

- 연 1건의 보존묘지 지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가정

※ 서울시는 현재까지 보존묘지 자체 등록(지정) 건수 없음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부서장 등 내부인원 외 외부전문가의 인원은 7명이고(총 참석인원 10명) 2시간 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

라. 비용추계 산식

- 시 보존묘지 지정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비용 ≒ 6,750,000원

- 시 보존묘지 지정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비용

$$= \sum_{i=1}^5 (\text{연간 시 보존묘지 지정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시 보존묘지 지정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비용

$$= (\text{회의수당 단가} \times \text{인원수}) + \text{업무추진경비}$$

$$= (150,000\text{원} \times 7\text{명}) + 300,000\text{원}$$

$$= 1,350,000\text{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